

독일 실정법상 ‘인적 결합체’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유 주 선**

목 차

I. 서론	3. 판례를 통한 권리능력 인정-민법상 조합-
II. 출발점으로 법적인 존재인 자연인, 그리고 자연인의 결합	4. 소결
1. 권리주체로서 자연인	IV. 인적 단체의 책임체계
2. 자연인의 결합체	1. 자연인의 책임
3. 인적 결합체의 권리능력	2. 합수조합의 책임체계
III. ‘인적 결합체’의 다양한 권리능력 취득	3. 법인의 책임체계
1. 공적인 등기나 국가 승인을 통한 방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4. 소결
2. 법률 규정에 의한 방법-합명회사와 합자회사-	V. 우리나라 ‘인적 결합체’와 비교 및 비판
	1. 회사형태에 대한 비교
	2.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도입과 비판
	VI. 시사점과 결론

I. 서론

독일 실정법 ‘인적 결합체’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결합인 ‘인적 결합체’는 독일의 다양한 실정법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법상 조합(Besellschaft bürgerliches Rechts: GbR),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및

* 본 논문은 2013년 3월 22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독일 사단법상 권리능력과 책임체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타당한 코멘트를 해 주신 영산대학교 정성숙 교수님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최영홍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강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합수조합(Gesamthandgesellschaft)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익명조합(Stille Gesellschaft)은 영업자와 출자자의 결합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이기는 하지만, 영업자만이 전면에 나서고 출자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상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¹⁾

‘인적인 결합체’라는 점에서는 법인(Juristische Person) 역시 합수조합과 다르지 않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법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 법인을 기본형으로 하여, 상법의 영역에서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유한책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변형물로서, 다소 인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법인의 요소를 상실하지 않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 Haftung: GmbH)이다. 유한회사는 법인이면서 유한책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회사의 구성원이 업무집행자로 등장한다든지, 감독기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합수조합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협동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GenG)을 어떤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협동조합은 법인의 영역에 속한다. 명칭 역시 ‘등기된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고 있어, 입법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제 이익에 대한 동기가 달라서 농업협동조합, 영업협동조합, 주택건설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발전시켰다.

1) 독일 대부분의 회사법 교재를 보면, 익명조합을 빼 놓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인적 결합체의 한 형태로서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Hüffer, *Gesellschaftsrecht* (Verlag C.H.Beck, 2003), S. 252 ff.; Hueck/Windbichler, *Gesellschaftsrecht*, 20. Aufl., (Verlag C.H.Beck, 2003), S. 221 ff.

본 논문은 독일 실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인적 결합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독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출발점으로 법적인 존재인 자연인, 그리고 자연인의 결합

1. 권리주체로서 자연인

개별적인 인간은 자연인(Natürliche Person)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독일 민법 제1조). 독일 민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²⁾ 권리능력의 소유는 권리와 의무의 소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권리와 의무를 소지한 자는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 자연인들 사이에서 법률행위를 통하거나, 또는 법적인 규정을 통하여 상이한 내용의 법적인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연인의 결합체

자연인의 다수가 함께 모여 단체를 결성하고자 한다고 상상 해보자. 그들이 개인의 지위를 초월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³⁾ 그 합의를 통하여 발생하는 그 단체가 법률거래에

2) Mummenhoff, *Gründungssysteme und Rechtsfähigkeit* (Carl Heymann Verlag KG, 1979), S. 3.

3) 독일 민법 제703조는 그러한 면을 볼 수 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에

하나의 단일한 권리주체로서 등장하게 된다면, 보다 더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기관을 통한 단체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 단체의 행위는 자연인의 행위와 별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3. 인적 결합체의 권리능력

인적 단체가 권리주체로서 인정되고, 그 단체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동일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인적 단체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주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민사법의 영역에서 흥미로움을 던져주는 이 문제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의 법률적인 전제조건과 사적자치에 대한 활동여지(Spielraum)를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⁴⁾ 또한 이러한 사적자치의 활동여지를, 일정한 목적에 얼마나 실용적으로 또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구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법률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거래안전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Ⅲ. ‘인적 결합체’의 다양한 권리능력 취득

‘인적 결합체’ 혹은 ‘인적 단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능력을 획득하는가에 대하여 독일 민사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⁵⁾ 인적 단체가 권리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하여 조합원은 상호간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기여를 할 의무, 특히 약정된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민법상 조합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민법 제703조에 상응한다.

4) Mummenhoff, “Zur Alleinhaftung juristischer Person”, in *Festschrift für Kim Hyung Bae* (1995), S. 155 (156 f.).

1. 공적인 등기나 국가 승인을 통한 방법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일정한 인적 단체가 특별하게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등기소의 등기나 국가의 허락을 통하여 권리능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창설적인 등기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리와 의무의 소지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독일 민법 제21조 이하는 사단(Vereine)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은 관한 구법원의 사단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비영리사단에 대하여 등기를 통하여 권리능력이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의 경우, 연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공적인 허가를 통하여 권리능력이 획득될 수 있다. 제21조가 비영리사단에 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제22조는 주식회사(AG)⁶⁾와 등기된 협동조합(GenG)⁷⁾을 기본모델로 하고 있는 영리사단의 권리능력에 대한 사항이

5) 특히 Soergel/Hadding, BGB(2000), Vor § 21 Rdn. 3 ff,

6) 독일 주식법 제1조와 제41조를 참조. § 1 (Wesen der Aktiengesellschaft) AktG (1) Die Aktienbesellschaft ist eine Gesellschaft mit eigener Rechtspersönlichkei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Gesellschaft haftet den Gesellschaftsgläubigern nur das Gesellschaftsvermögen. (2) Die Aktiengesellschaft hat ein in Aktien zerlegtes Grundkapital. § 41 (Handeln im Namen der Gesellschaft vor der Eintragung. Verbotene Aktienaussgabe) AktG (1) Vor de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besteht die Aktiengesellschaft als solche nicht. Wer vor der Eintragung der Gesellschaft in ihrem Namen handelt, haftet persönlich; handeln mehrere, so haften sie als Gesamtschuldner.

7) 독일 등기된 협동조합법 제1조 제1항, 제13조 및 제17조를 참조. § 1 (Wesen der Genossenschaft) GenG (1) Gesellschaften von nicht geschlossener Mitgliederzahl, deren Zweck darauf gerichtet ist, den Erwerb oder die gemeinschaftlichen Geschäftsbetrieb zu fördern(Genossenschaften), erwerben die Rechte einer "eingetragenen Genossenschaft"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이하 생략. § 13 (Rechtszustand vor der Eintragung) Vor der Eintragung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ihres Sitzes hat die Genossenschaft

다. 영리사단이나 비영리사단은 ‘단체적으로 조직화 된 인적 결합’(körperschaftlich organisierte Gemeinschaft)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인적 단체가 종종 단체적으로 조직화 된 ‘인적 결합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된다고 할지라도,⁸⁾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 Haftung: GmbH) 역시 영리사단의 한 형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영리사단 및 주식회사, 등기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의 영리사단 등이 해당 등기소에 등기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결합된 권리능력을 획득한 경우라 한다면, 이제 그 단체들은 이른바 ‘법인’(juristische Person)으로 표시된다. 권리능력이 인적 단체에게 국가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 즉 영리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

2. 법률 규정에 의한 방법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

2.1 법규에 의한 권리능력

하나의 인적 단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가능성은 법률적인 규정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명백하게 발생하게 된다. 즉 특별히 정해진 구성요건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충족을 통하여 인적 단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die Rechte einer eingetragenen Genossenschaft nicht, § 17 (Juristische Person; Formkaufmann) (1) Die eingetragene Genossenschaft als solche hat selbständig ihre Rechte und Pflichten; sie kann Eigentum und andere dingliche Rechte an Grundstücken erwerben, vor Gericht klagen und verklagt werden. (2) Genossenschaften gelten als Kaufleute im Sinne des Handelsgesetzbuchs.

8) 유한회사가 인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본회사이면서 소유와 경영에 대한 예외적인 면이 다수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Hüffer, 앞의 책, S. 303 f.).

2.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독일 실정법이 추후도 의심을 하지 않고 '인적 단체'에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독일 회사법상 인정되고 있는 합명회사(oHG)와 합자회사(KG)에서 볼 수 있다.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합자회사는 최소한 무한책임사원 한 명과 유한책임사원 한 명이 결합한 형태를 띤다. 양자는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 폐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2.3 구체적인 규정들

독일 상법 제105조 이하는 합명회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⁹⁾ 인적인 결합체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조합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합계약에 기하여 조합원은 상호 간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기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독일 민법 제705조). 독일 상법은 공동의 이름을 가지고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인적 단체가, 만약 그 단체 사원 누구도 단체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의 제한 될 수 없는 경우라 한다면, 그 인적 단체는 합명회사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독일 상법 제105조 제1항). 합자회사 역시 합명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합자회사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 105 (Begriff der OHG; Anwendbarkeit des BGB) HGB (1) Eine Gesellschaft, deren Zweck auf den Betrieb eines Handelsgewerbes unter gemeinschaftlicher Firma gerichtet ist, ist eine offene Handelsgesellschaft, wenn bei keinem der Gesellschafter die Haftung gegenüber den Gesellschaftsgläubigern beschränkt ist. (2) 이하 생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정법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상법은 ‘인적 단체’인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전 영업행위를 개시하거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독일 상법 제123조 제2항¹⁰⁾; 제161조 제2항),¹¹⁾ 동 회사의 이름(Name)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 상법 제124조¹²⁾; 제161조 제2항).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법률을 통한 특별한 구성요건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라 한다면, 이러한 ‘인적 단체’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권리주체로 등장하게 된

-
- 10) § 123 (Wirksamkeit im Verhältnis zu Dritten) HGB (1) Die Wirksamkeit der offenen Handelsgesellschaft tritt im Verhältnisse zu Dritten mit dem Zeitpunkt ein, in welchem die Gesellschaft in das Handelsregister eingetragen wird. (2) Beginnt die Gesellschaft ihre Geschäfte schon vor der Eintragung, so tritt die Wirksamkeit mit dem Zeitpunkte des Geschäftsbeginns ein, soweit nicht aus § 2 oder § 105 Abs. 2 sich ein anderes ergibt.
- 11) § 161 (Begriff der KG; Anwendbarkeit der OHG-Vorschriften) HGB (1) Eine Gesellschaft, deren Zweck auf den betrieb eines Handelsgewerbes unter gemeinschaftlicher Firma gerichtet ist, ist eine Kommanditgesellschaft, wenn bei einem oder bei einigen von den Gesellschaftern die Haftung gegenüber den Gesellschaftsgläubigern auf den Betrag einer bestimmten Vermögenseinlage beschränkt ist(Kommanditisten), während bei dem anderen Teile der Gesellschafter eine Beschränkung der Haftung nicht stattfindet(persönlich haftende Gesellschafter). (2) Soweit nicht in diesem Abschnitt ein anderes vorgeschrieben ist, finden auf die Kommanditgesellschaft die für die offene Handelsgesellschaft geltenden Vorschriften Anwendung.
- 12) § 124 (Rechtliche Selbständigkeit; Zwangsvollstreckung in Gesellschaftsvermögen) (1) Die offene Handelsgesellschaft kann unter ihrer Firma Rechte erwerben und Verbindlichkeiten eingehen, Eigentum und andere dingliche Rechte an Grundstückckenerwerben, vor Gericht klagen und verklagt werden. (2) Zur Zwangsvollstreckung in das Gesellschaftsvermögen ist ein gegen die Gesellschaft gerichteter vollstreckbarer Schuldtitel erforderlich.

다.¹³⁾ 만약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운영하는 영업행위가 독일 상법 제1조 제2항¹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상업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이 창설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3. 판례를 통한 권리능력 인정 - 민법상 조합 -

3.1 민법상 조합의 법형성

민법상 조합(GbR) 그 자체가 권리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였다.¹⁵⁾ 1966년 연방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이 다른 인적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¹⁶⁾ 또한 민법상 조합이

13) Vgl. BGHZ 10, 91 (100); BGH NJW 1973, 2198 = WM 1973, 1291 = JZ 1975, 178.

14) 독일 상법 제1조와 제2조는 당연상인과 임의상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Istkaufmann) HGB (1) Kaufmann im Sinne dieses Gesetzesbuchs ist, wer ein Handelsgewerbe betreibt. (2) Handelsgewerbe ist jeder Gewerbebetrieb, es sei denn, dass das Unternehmen nach Art oder Umfang einen in Kaufmännischer Weise eingerichteten Geschäftsbetrieb nicht erfordert. § 2 (Kannkaufmann) HGB Ein gewerbliches Unternehmen, dessen Gewerbebetrieb nicht schon nach § 1 Abs. 2 Handelsgewerbe ist, gilt als Handelsgewerbe im Sinne dieses Gesetzesbuchs, wenn die Firma des Unternehmens in das Handelsregister eingetragen ist. Der Unternehmer ist berechtigt, aber nicht verpflichtet, die Eintragung nach den für die Eintragung kaufmännischer Firmen geltenden Vorschriften herbeizuführen. Ist die Eintragung erfolgt, so findet eine Löschung der Firma auch auf Antrag des Unternehmers statt, sofern nicht die Voraussetzung des § 1 Abs. 2 eingetreten ist.

15) 자세한 유추선,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사)한국기업법학회, 2006), 384쪽 이하; 안성포,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사)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285쪽 이하.

16) BGHZ 46, 291 (296).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수표능력을 부정하였다.¹⁷⁾

그러나 민법상 조합이 협동조합의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1991년 연방대법원은 합수로써 민법상 조합 그 자체가 협동조합의 설립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였다.¹⁸⁾ 1992년 역시 주식회사에서 단체의 사원성 및 다른 민법상 조합에의 참여를 인정하였다.¹⁹⁾ 1997년에는 민법상 조합의 수표능력을 긍정²⁰⁾하였던 연방대법원, 2001년 법률거래에 있어서 고유한 권리의무를 갖는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게 당사사능력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²¹⁾

3.2 학자들의 입장

민법상 조합이 권리능력이 갖는 것인가에 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다수성이론(Vielheitstheorie) 또는 개별적인 합수이론이라고 한다. 다수성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Marburg 대학의 Beuthien 교수이다.²²⁾ 그에 따르면, 회사에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개별적인 사원들을 배열하고 있다. 개별적인 합수이론에 따르면, 민법상 조합 그 자체는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못하고, 단지 재산권의 소지자로서 전체 조합의 결합에서 조합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상 조합 그 자체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17) BGHZ 59, 179.

18) BGHZ 116, 86 (88).

19) BGH BB 1992, 1621.

20) BGH NJW 1997, 2754.

21) BGH NJW 2001, 1056.

22) Beuthien, "Systemfragen des Handelsrechts", Festgabe Zivilrechtslehre 1934/1935, S. 55 f.; ders., "Zur Begriffsverwirrung im deutschen Gesellschaftsrecht", JZ (2003), 715 (716 f.).

반면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단일성이론(Einheitstheorie)이라고 한다. 단일성이론은 민법상 조합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역시 Marburg 대학교에 재직 중인 Wertenbruch 교수를 들 수 있다.²³⁾ 그는 집단(Gruppe)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합수조합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 Flume 교수의 이론을 발전시켜,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들로부터 인격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원들 그 자체로서, 구성원들의 인적결합체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

4. 소결

독일 민법은 인적 단체의 경우 두 가지 방식(독일 민법 제21조와 제22조)을 통하여 권리능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적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정법상 법인이 되며 법인은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인적 단체가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독일 실정법은 법인과 다른 법적 형태인 합수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합수조합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조합 그 자체로 권리능력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독일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비록 그 자체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실정법상 인정되었던 권리능력은 '민법상 조합'에 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23) Wertenbruch, "Die Parteifähigkeit der GbR—die Änderung für die Gerichts- und Vollstreckungspraxis", *NJW* (2002), 324 ff.; ders., *Die Haftung von Gesellschaften und Geschäftsanteilen in der Zwangsvollstreckung* (Carl Heymann Verlag, 2000), S. 211 ff.

24) Wertenbruch, 위의 책, S. 211 ff.

법인과 합수조합 양자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²⁵⁾ 자연인은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인 역시 법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질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등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합수조합 역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법인이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합수조합은 부분적으로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법인과 법인이 아닌 인적 단체라는 사실에서 차이점이 있다. 더 나아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nichtrechtsfähiger Verein)과 ‘설립중회사’(Vor-GmbH oder Vor AG)에 대한 권리능력 인정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 이상 양자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²⁶⁾

IV. 인적 단체의 책임체계

1. 자연인의 책임

자연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소지자 개념이 등장한다.²⁷⁾ 하나의 기업은 각각의 기업소지자에게 귀속되고, 하나의 기업소지자는 필수적

25) Peifer, “Rechtsfähigkeit und Rechtssubjektivität der Gesamthand—die GbR als oHG”, *NZG* (2001), S. 296 ff.

26) 안성포, “독일법에 있어서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권리주체성”, *비교사법 제7권(사)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273쪽 이하; 정성숙,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의 책임—독일에 있어서 판례와 다수설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사)한국상사법학회*, 2004), 333쪽 이하.

27) 기업소지자에 대하여는 Rittner, *Die werdende juristische Person* (1973), S. 282 ff.

으로 기업에 귀속하게 된다.²⁸⁾ 개별적인 자연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는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 기업소지자는 자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구별되는 특별한 책임재산이 필요하지 않다. 자연인으로서 기업소지자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이다. 개별적인 자연인이 다른 자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의 채무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각각의 채권자는 그의 개인적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2. 합수조합의 책임체계

자연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재산 전체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인적 단체'라는 측면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다른 책임구조를 갖게 된다. 이미 독일 상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독일의 실정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 상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합명회사는 그 자체로서 계약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주체로서 인정받는 합명회사는 그 자체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합명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인적인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²⁹⁾

합명회사의 가까운 친척(?)인 합자회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이한 책임의 구성원이 존재한다. 합명회사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합자회사에서

28) K. Schmidt, *Handelsrecht* (Carl Heymann Verlag KG, 3. Aufl., 1987), § 4 IV, S. 74.

29) 독일 상법 제128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인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³⁰⁾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그는 단지 정해진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제한된 책임구조를 갖는다. 합자회사에서도 유한책임사원이라면, 그는 출자한 것 이상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³¹⁾

만약 합자회사가 “유한책임 합자회사”(GmbH & Co. KG)의 구조로 형성되었다면, 그 회사형태의 경우 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유한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다소 특별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그 유한회사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사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의 책임체계

독일법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및 등기된 협동조합 등은 대표적인 법인에 해당한다. 자연인의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 역시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³²⁾ 다만, 인적 결합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법규에 의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³³⁾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채무에 대하여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의 구성원은 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한책임의 형태로부터 배제된다.³⁴⁾ 회사의 계약당사자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단지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행이 가능할 뿐,

30) 독일 상법 제161조 제2항, 제128조.

31) 독일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4항.

32) 다만, 법인이라고 하는 성질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 등이 제한 받을 수 있고, 법규에 의하여 일부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33) 이기수/최병규/조지현, 회사법(상법강의 II)(박영사 제8판, 2009), 91쪽 이하.

34) 독일 주식회사법 제1조 제1항 제2문, 유한회사법 제13조 제2항.

회사의 구성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등기된 협동조합'(GenG)³⁵⁾과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성원의 인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달리, 실정법상 구성원에게 부가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등기된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구성원에게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만,³⁶⁾ 개별적인 사례에서 정관은 구성원의 보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도 가능하다.³⁷⁾

4. 소결

자연인의 경우, 그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은 단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선임된 기관을 통하여 행위능력을 갖는다.³⁸⁾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된 채무는 단지 그 단체의 채무이므로, 그 구성원은 인적인 책임, 즉 개인적인 재산으로 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 구성원은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재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처리할 수 없다.³⁹⁾ 또한 구성원은 단지 회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출자액만큼만 책임을 부담하고, 외부적인 관계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은 언제나 법률거래에 독

35) 독일 협동조합이 법률에 의하여 처음 규정된 것은 1867년의 프로이센법에 의해서이다. 그 후 오랜 준비 끝에 오늘날의 독일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인 영업협동조합과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률(Gesetz betr. die Erwe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이 1889에 공포되어 최근 2006년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36) 등기된 협동조합법 제2조.

37) 등기된 협동조합법 제6조.

38) U. Huber, "Rechtsfähigkeit, juristische Person und Gesamthand", *Festschr. Lutter*, S. 107 (113).

39) Wertenbruch, 앞의 책, S. 211.

립적으로 참가하고, 독자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귀속주체이며 회사 재산의 소지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적 단체인 법인은 단지 단체의 재산만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만의 재산인 회사재산으로 법인이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서도 보았듯이 반드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사원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개별적인 사원이 보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한다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우리가 독일의 다양한 법인에 대한 책임구조를 고찰해 보건대, 법인이 라는 조직체가 일반적인 언명, 즉 ‘법인에서 사원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⁴⁰⁾ 즉 이는 구성원책임의 배제가 법인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⁴¹⁾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외부적인 관계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의 형태는 독일법에서 존재하지 않는다.⁴²⁾

V. 우리나라 ‘인적 결합체’와 비교 및 비판

1. 회사형태에 대한 비교

1.1 형태의 다양성

독일 실정법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

40) Wiedemann, *Gesellschaftsrecht* (1980), § 4 I 3b, S. 202.

41) T. Raiser, “Geamthand und juristische Person im Licht des neuen Umwandlungsrecht”, *AcP* 194(1994), S. 495 ff.

42) Schöpflin, *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Carl Heymann Verlag, 2003), S. 92.

명회사 등이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유한책임 합자회사'(GmbH & Co. KG)와 '주식합자회사'(KGaA)라는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회사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⁴³⁾

1.2 법인과 합수의 영역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양 국 모두 실정법상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양 회사의 형태가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이 아닌 합수조합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법전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과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도입과 비판

2.1 도입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공동기업형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는 입법적인 개정이 있었다.⁴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4가지 회사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

43) 주식합자회사에 대하여는 이영중, “독일법상의 주식합자회사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25집(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19쪽 이하.

44) 최완진, 신회사법요론-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는 375쪽 이하;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401쪽 이하.

사는 거의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⁴⁵⁾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유한책임회사다. 또한 회사는 아니면서 도입된 것이 합자조합이다.

2.2 비판

독일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합수조합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양 회사를 법인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양 회사는 합수조합에 해당한다. 합자회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자조합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던가에 대하여는 회의감이 든다. 합자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인이라고 한 것뿐이지, 합자회사는 합자조합과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명칭부터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전혀 차이가 없다. 유한회사가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입법할 필요가 있었던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한책임회사를 규정하고자 하였다면, 유한책임회사의 규정을 없앴어야 하고, 더 바람직한 것은 유한회사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을 취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규정을 입법하지 말았어야 했다. 의미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이다.

45) 소규모 사업장조차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이유는 개정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과세의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다. 합명, 합자회사의 경우 그 실질은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자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회사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과세가 발생한다.

Ⅵ. 시사점과 결론

독일 실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발견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필자의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독일의 입법자는 권리능력 있는 인적 단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권리주체로서 독립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인적 단체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배제하는 면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권리능력 있는 법인이 언제나 그 자체로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판례 역시 유한회사의 제한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문제를 법인격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법인과 자연인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민법상 조합의 법형성이 독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민법상 조합, 그 자체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견해가 무너지고, 인적 결합으로서 조합 그 자체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독일 대법원의 노력은 가히 존경할 만하다. 사회적 현상의 발전을 따라 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상 조합에 대한 판례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어 법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인적 단체로서 민법상 조합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에 관련되게 된다면, 역시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인정'이라고 하는 법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 판례에서 발전하고 있는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에 대한 인정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비교법적인 연구의 의미를 주고 있다.

46) BGHZ 149, 10; BGHZ 150, 61; BGHZ 151, 181.

권리능력은 사람(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가, 아니면 법인이 아닐지라도 인적 단체는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독일에서도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독일 실정법은 합수조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과 합수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의 문제, 또한 권리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양자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의 문제 등이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다.⁴⁷⁾ 더 나아가 판례의 태도에 따라 ‘민법상 조합’이 권리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설립중회사’가 권리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에 이르지 않는 ‘설립중회사’는 진정 권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민법상 조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이상, 민법상 조합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용어’의 혼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 판례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투고일 2013년 4월 28일, 심사(의뢰)일 2013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8일)

주제어 : 독일 실정법상 인적 결합체, 자본회사 유한책임,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민법상 조합의 책임구조, 합수조합과 법인

47) Beuthien, “Zur Begriffsverwirrung im deutschen Gesellschaftsrecht”, *JZ* (2003), 715 ff.; Huber, 앞의 논문, S. 107 (109 ff.).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기수/최병규/조지현, 회사법(상법강의 II), 박영사 제8판, 2009.
- 최완진, 신회사법요론-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 Hüffer Uwe, *Gesellschaftsrecht*, Verlag C.H.Beck, 2003.
- Hueck Götz/Windbichler Christine, *Gesellschaftsrecht*, 20. Aufl., Verlag C.H.Beck, 2003.
- Mummenhoff Winfried, *Gründungssysteme und Rechtsfähigkeit*, Carl Heymann Verlag KG, 1979.
- Rittner Franz, *Die werdende juristische Person*, 1973.
- Schöpfli Martin, *Der nichtsrechtsfähige Verein*, Carl Heymann Verlag, 2003.
- Schmidt Karsten, *Handelsrecht*, Carl Heymann Verlag KG, 3. Aufl., 1987.
- Soergel Hans Theodor, *Bürgerliches Gesetzbuch*, 2000.
- Wertenbruch Johannes, *Die Haftung von Gesellschaften und Geschäftsanteilen in der Zwangsvollstreckung*, Carl Heymann Verlag, 2000.
- Wiedemann Herbert, *Gesellschaftsrecht-Ein Lehrbuch des Unternehmensrecht und Verbandsrecht*, Band I Grundlagen, 1980.

2. 논문

- 안성포, “독일법에 있어서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권리주체성”, 비교사법 제7권, (사)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273-301쪽.

- _____,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사)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286-313쪽.
- 유주선,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사)한국기업법학회, 2005, 379-403쪽.
- 이영중, “독일법상의 주식합자회사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25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19-441쪽.
- 정성숙,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의 책임-독일에 있어서 판례와 다수설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사)한국상사법학회, 2004, 330-360쪽.
- Beuthien Volker, “Systemfragen des Handelsrechts”, Festgabe Zivilrechtslehre 1934/1935.
- _____, “Zur Theorie der Stellvertretung im Gesellschaftsrecht”, Festschr, Zöllner.
- _____, “Zur Begriffsverwirrung im deutschen Gesellschaftsrecht”, JZ, 2003, 715-722쪽.
- Huber Ulrich, “Rechtsfähigkeit, juristische Person und Gesamthand”, in *Festschrift für Lutter Marcus*, 107-139쪽.
- Mummenhoff Winfried, “Zur Alleinhaftung juristischer Person”, in *Festschrift für Kim Hyung Bae*, 1995, 155-166쪽.
- Peifer Karl-Nikolaus, “Rechtsfähigkeit und Rechtssubjektivität der Gesamthand-die GbR als oHG”, *NZG*, 2001, 296-300쪽.
- Raiser Thomas, “Geamthand und juristische Person im Licht des neuen Umwandlungsrecht”, *AcP* 194, 1994.
- Wertenbruch Johannes, “Die Parteifähigkeit der GbR-die Änderung für die Gerichts-und Vollstreckungspraxis”, *NJW*, 2002.

[Zusammenfassung]

Untersuchung über die Personenvereinigungen im deutschen positiven Recht

Ju-Seon Yoo*

Es geht um die Rechtsfähigkeit und die Haftung der Personenvereinigungen in deutschen positiven Recht. Eine Möglichkeit, einer Gemeinschaft die eigene Rechtsfähigkeit zu zuerkennen, besteht darin, gesetzlich festzulegen, dass sie, wenn bestimmte tatbestandliche Voraussetzungen erfüllt sind, durch rechtsbegründende(konstitutive) Eintragung in ein amtliches Register als solcher Träger von Rechte und Rechtspflichten sein kann. Im geltend Recht int dieser Weg in erster Linie für die körperschaftlich organisierten Gemeinschaften beschrritten worden, namentlich die Aktiengesellschaft,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eingetragene Genossenschaft. Eine andere Möglichkeit, einer Gemeinschaft die eigene Rechtsfähigkeit zuzuerkennen, besteht darin, durch gesetzliche Vorschrift festzulegen, dass sie, wenn bestimmte tatbestandliche Voraussetzungen erfüllt sind, allein hierdurch als solche Träger von Rechten und Rechtspflichten sein kann. In geltenden Recht ist dieser Weg für die offene Handelsgesellschaft und die Kommanditgesellschaft beschrritten worden. Nach zutreffender Auffassung, der sich auch die Rechtsprechung angeschlossen hat, kommt nicht nur der oHG und der KG, sondern auch

* 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Kangnam Universität in Korea

ihrem Grundmodell,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s Rechts als selbständigem Träger des Gesellschaftsvermögens kraft Gesetzes eigene Rechtssubjektivität zu. Der Einzelkaufmann hat seine Schulden aus seinem gesamten Vermögen zu begleichen. Jeder Gläubiger kann in das Gesamtvermögen vollstrecken. Ist eine Gesellschaft Unternehmensträger, so gibt das Gesellschaftsrecht Auskunft über die Haftung. AG und GmbH sind juristische Person, für deren Verbindlichkeiten die Gesellschafter nicht persönlich haften. Bei der oHG verhält es sich anders. Sie kann zwar, wie die AG und GmbH, selbst Vertragspartner und Schuldner sein, aber alle Gesellschafter haften persönlich und beschränk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Gesellschaft. Mit dem Urteil von 29. 01. 2001 hat der Bundesgerichtshof die Rechtsfähigkeit und Parteifähigkeit der GbR anerkannt. Soweit der Gesellschafter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GbR persönlich haftet, entspricht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erbindlichkeit der Gesellschaft und der Haftung des Gesellschafters derjenigen bei der oHG. Bei dieser Abhandlung werden die verschiedenen Argumente durch die Unterschied der Rechtsfähigkeit und der Haftung bei der Gesellschaften in koreanischen und deutschen Recht dargestellt.

Stichwörter : Personenvereinigung im deutschen positiven Recht, Kapitalgesellschaft und Personengesellschaft, Beschränkte Haftung, Rechtsfähigkeit und Haftungssystem in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s Rechts, Gesamthandsgesellschaft und juristische Person